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기관(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광주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건강관리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수집된 실증데이터를 AI·헬스케어기업 등이 활용할수 있도록 수집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2024년 02월 21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 목적
- 지역 시민 대상 헬스케어 서비스 및 자가건강관리 환경을 제공
 - 시민의 서비스이용에 따른 생성 데이터를 지역 AI·의료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이 제품개발에 활용토록 지원

☐ 사업주요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기간	○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5.12.31.까지 - 당해연도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4.12.31.까지 ※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연장 여부 및 운영 예산 규모를 판단	
지원규모	지원내용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운영 (공모를 통해 선정, 당해연도 2개소, 6.5억원) ※ 사업비는 중간평가 또는 점검을 통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지원구분	○ (트랙 1 : 복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광주광역시 북구 내 소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상시제공 및 해당 서비스와 관련데이터 수집/처리를 위한 실증장소 구축·운영 ○ (트랙 2 : 중증질환 전문 건강관리소) 라이프로그 주 이용자 연령층(50대 이상)을 고려한 중증질환 전문관리가 가능한 건강관리소 구축, 특정질환 대상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중증질환 모니터링이 가능한 실증장소 구축·운영
지원대상	공통사항	○ (주관기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처리한 실적/경력이 있고 해당 서비스와 관련 데이터 처리를 원활히 수행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 (협력기관) 지역 시민의 계층별(유소년층~고령층)그룹 등을 타깃으로 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실증) 장소 제공이 상시 가능한 광주지역 내 (기초)지자체, 비영리기관, 보건소, 협회, 단체, 사업소 등 ※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할 경우 단독 참여 가능(주관기관이 협력기관 역할을 동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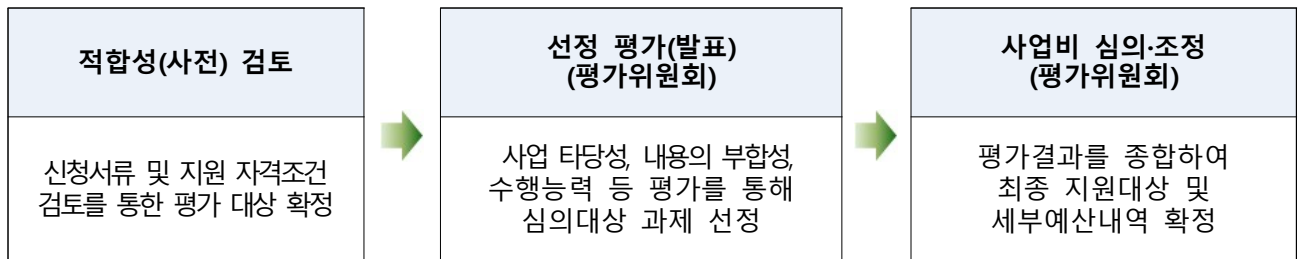
	트랙 2 주관기관	○ 위의 공통사항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포함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1) 4대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또는 기업)으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운영에 적합한 장비 및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2) 중증질환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를 3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질병의 조기진단 및 진단이후 관리체계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3) 중증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전문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사업비		○ 최대 6.5억원 ('24년 당해연도, 과제당 최대 3.25억원) - '25년(4차년도)의 경우 과제당 연간 운영비* 2억원 내외 지원 예정 * 운영비(인건비, 장비유지보수, 장비 추가 도입 등)는 정부 예산심의 결과와 연차평가 결과 등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사업비(6.5억원)이내에서 과제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주요 과업	주관 기관	○ 특정 계층 시민 대상 실증장비 구축 및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 생성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연동 지원(시민의료앱 등) ○ 서비스 인력 교육 및 운영지원(매뉴얼화) ○ 기타 과제 진행 및 현황/결과보고 등 제반사항
	협력 기관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 실증장소 무상 제공을 위해 MOU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 선정 후 MOU 등 행정사항 추진 (MOU 주체(안) : 광주광역시↔광주TP↔협력기관(장소제공기관) 등)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실증을 위한 서비스기관(기업) 등 관계기관 협력, 운영 환경 지원 등 ○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문객 모집 등 홍보 지원

□ 지원조건

- (기술료) 해당 사항 없음
- (유지기간)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장소는 동 사업기간(협약월~'25.12) 종료일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주관기관(민간위탁사업자)의 경우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 연장 여부를 검토하며, 사업자 연장시 사업기간 종료일('25.12)까지 운영
 - 연차평가 결과 연장 불가 판단시 차년도부터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관기관이 변경되어 운영 추진
- (실증 장비 소유권 및 성과물의 귀속)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 소유로 함
 - ※ 사업수행은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90호)" 및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92호)에 따름

□ 평가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02.21(수)	◦ 공고(광주TP 홈페이지)	광주TP
↓			
접수	'24.03.13(수)	◦ 서류접수(마감일 오후 15:00 까지)	신청기관
↓			
선정 평가	'24.03.21(목)	◦ 지원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			
제안내용 협의·조정 (필요시)	'24.03.25(월)	◦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광주TP, 수행기관 (주관/협력)
↓			
협약체결 및 수행	'24.03.25(월)	◦ 광주TP - 수행기관(주관/협력) 협약	광주TP, 수행기관 (주관/협력)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구분	이름(직책)	연락처	이메일주소(제출처)
사업내용	이은영(전임)	062-602-7276	ley@gjtp.or.kr
행정사항	황인영(전임)	062-602-7281	hiy9529@gjtp.or.kr

○ 접수일 : '24. 03. 13.(수), 15시 까지(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업이 당일 15시 이전에 메일을 발송했더라도 당일 15시까지 광주테크노파크 담당자의 이메일에 도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접수됨. 15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미제출로 간주)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여유있게 제출 요망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구분		양식제공 여부	제출필수 여부	제출 해당기관	
				주관기관(업) 또는 컨조사업	협력기관
1. 사업계획서		○	필수제출	○(주관기관이 제출, 1식)	
* 표지서명 및 날인 후 표지페이지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HWP파일로 별도 제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붙임1	X	필수제출	○	○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붙임2	X	필수제출	○	-
4.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붙임3	X	필수제출	○	-
5.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붙임4	○	필수제출	○	-
6.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붙임5	○	필수제출	○	-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6	○	필수제출	○	-
8. 현금부담·현물출자 약약서(해당시)	붙임7	○	선택사항	해당시	-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붙임8	○	필수제출	○	-
10.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붙임9	○	필수제출	○	-
11. 발표자료(자유양식)	붙임10	X	필수제출	○(주관기관이 제출, 1식)	
12. 협력기관의 장소제공 및 협력 확인서(협력기관 직인 必)	붙임11	○	필수제출	-	○
13. 기타 증빙서류(사업비 산출내역 관련 견적 등)	붙임12	X	선택사항	필요시	필요시
1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붙임13	X	해당시	해당시	-

* 사업계획서 외 각 제출서류는 각 참여기관별로 첨부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 번 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사업계획서는 HWP 파일 별도 제출)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될 수 있음.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확인 및 보완을 위해 평가위원회 전까지 광주TP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제출시 필수 제출하되, 발표평가위원회 전 안내된 일정까지 수정보완하여 제출가능함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협약 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

□ 평가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배 점
운영 적합성 및 타당성	▪ 사업의 목표와의 부합성(10)	20
	▪ 운영계획/사전준비/추진계획 구체성 및 명확성(10)	
수행능력	▪ 실증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및 명확성(10)	50
	▪ 성과목표 달성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10)	
	▪ 장소의 활용도 및 적정성, 수행기관의 기 관련분야 추진 실적/경험, 제공 수행기관(협력기관 포함)의 과업수행능력 및 의지(30)	
추진계획 및 데이터 관리 방안	▪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10)	30
	▪ 실증장비의 이해도 및 활용 계획(10)	
	▪ 안전/데이터 보안 관리 구체성 및 명확성(10)	
합 계		100

□ 평가 및 선정절차

○ 적합성 검토

- (개 요)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기업(신청기관)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 (검토기준)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광주TP 내부검토
 - ※ 참여제한 여부 등(제출기관 제재 여부, 중복성 검토 등) 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 지역사업진흥원에 별도 문의 예정
 -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검토결과) 부적격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수행기업/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수행기업/기관, 수행기업/기관대표,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발표 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기관) 선정
-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신청기업(기관)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결과) 평가점수 최소 '보통(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기업(또는 기관)으로 선정.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
 - ※ 발표 평가위원회 결과 선정된 과제가 다수(2개 과제 이상)인 경우 최종 지원대상 과제(사업비 심의조정 대상과제)의 갯수와 지원예산(사업비 심의조정)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이에 과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경우라도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 한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협약체결

- 협약서류 검토를 통과한 협약대상 기업(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협약 추진

4

유의사항 및 문의처(제출처)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관에 개별통보)

□ 문의 및 제출처

- 담당부서 : (재)광주테크노파크 융합기술본부 AI융합센터
- 담당자

구분	이름(직책)	연락처	이메일주소(제출처)
사업내용	이은영(전임)	062-602-7276	ley@gjtp.or.kr
행정사항	황인영(전임)	062-602-7281	hiy9529@gjtp.or.kr

※ 기타 세부사항은 공모안내서 참조

2024년도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모안내서

2024. 2.



목 차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사업 목표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5. 사업 추진절차

II.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2. 과제 수행내용
3. 지원조건 등
4. 제재 사항

III.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2. 평가방법 및 기준
3. 기타 사항

IV. 사업신청 및 접수

1. 사업계획서 교부 및 작성
2. 신청 및 접수

사업 개요

□ 데이터·인공지능 활용기반 헬스케어 정책 및 산업의 급속한 성장

- 데이터의 활용이 다른 산업발전의 촉매역할을 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이터경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국민의료서비스 질향상 및 AI의료 융합산업의 도약을 위해 통합적인 데이터·AI 융합 지원 모델 마련 및 확산이 필요
-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기반의 선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지역 및 취약계층 대상의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적극적인 데이터 공유 및 활용플랫폼의 제공으로 데이터공유 활용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의료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비식별화/라벨링을 통한 대규모의 고용창출 및 플랫폼 기반의 환자공유 서비스 등 신규 비즈니스의 발생으로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 AI를 활용한 다양한 의료선진화 서비스 제공 필요성

- 데이터·AI융합 헬스케어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AI가 적용된 다양한 솔루션이 적극 활용되고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 필요
- 인공지능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및 인접도시를 중심으로 의료분야 병원정보시스템, AI진단 및 응급의료서비스 등 선진의료 서비스를 의료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환경구성 시급
- AI기술을 활용한 생활편의 기능 중 국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AI체감형 서비스를 보편화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획득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목표

광주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건강 관리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수집된 실증데이터를 AI·헬스케어기업 등이 활용할수 있도록 수집하여 지원

3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 추진 근거

- 국정과제 25번 바이오 헬스·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추진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2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촉진 등), 제27조(사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의 개발 촉진 등),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등에 관한 사업)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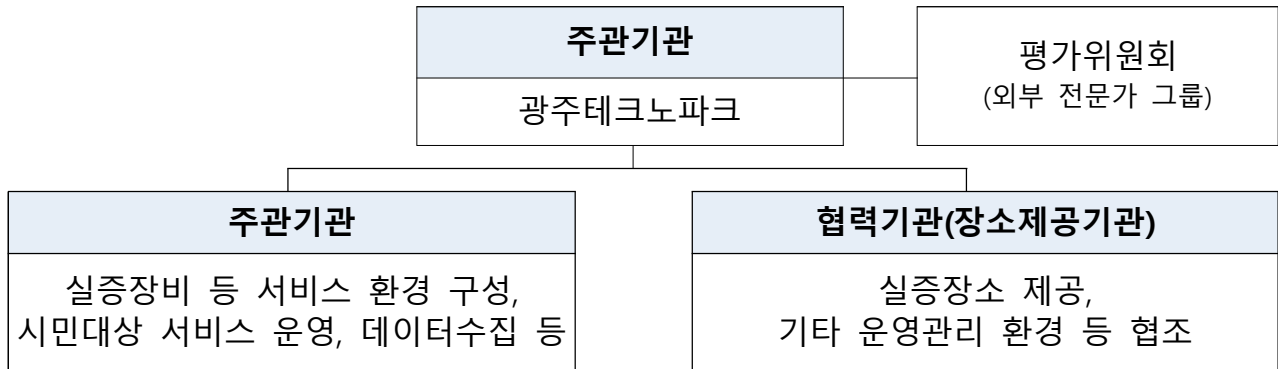
□ 관련 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
 - *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준용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
 -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신청과제 검토)을 명확화하기 위해 산업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준용하여 사전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될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부속고시(법령 시행 2020.8.5./시행령 시행 2021.2.5.)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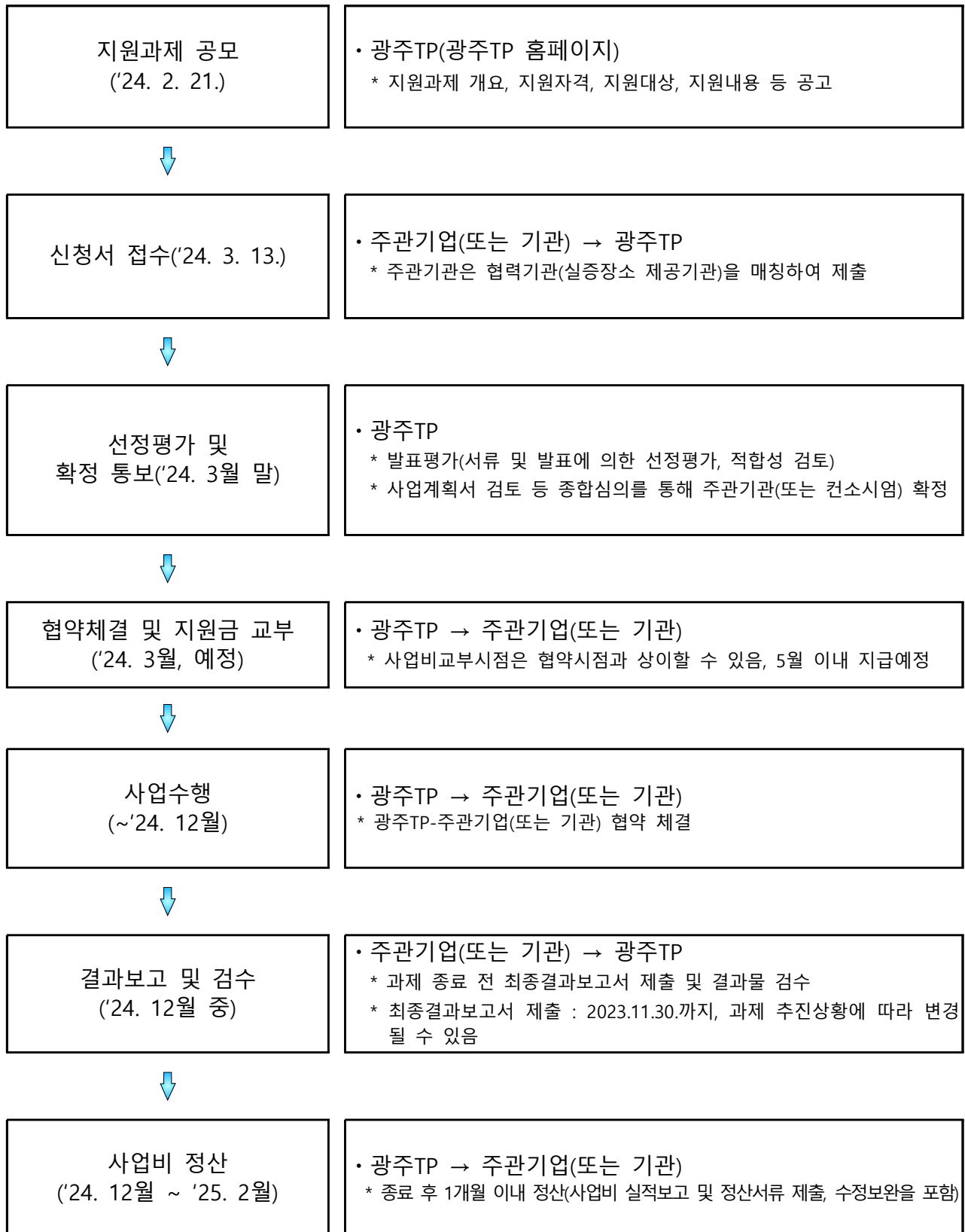
< 추진 체계 >



구 분	주 요 업 무
광주테크노파크 (주관기관)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원과제 공모 및 협약 ○ 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평가위원회	○ 지원과제 수행계획 평가 ○ 지원과제 수행결과 평가 등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주관기관 (기업 또는 기관)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증장비 등 운영 환경 구축·운영 ○ 방문객 대상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실증) 생성데이터 연동지원 ○ 과제진행 및 현황(진도)·결과 보고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협력기관 (장소제공기관)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 총 사업기간(협약월~'25.12.31)내 실증장소 무상 제공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실증을 위한 서비스기관(기업) 등 관계기관 협력, 운영 환경 지원 등 ○ 서비스 활용을 위한 방문객 모집 등 홍보 지원 등

5

사업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II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추진방향

- 광주지역 시민 대상 헬스케어(건강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가 건강관리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수집된 실증데이터를 AI·헬스케어기업 등이 활용하기 위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환경을 구축 및 운영

□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기간	○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5.12.31.까지 - 당해연도 사업기간 : 협약일부터 '24.12.31.까지 ※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연장 여부 및 운영 예산 규모를 판단	
지원규모	지원내용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운영 (공모를 통해 선정, 당해연도 2개소, 6.5억원) ※ 사업비는 중간평가 또는 점검을 통해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지원구분	○ (트랙 1 : 북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광주광역시 북구 내 소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상시제공 및 해당 서비스와 관련데이터 수집/처리를 위한 실증장소 구축·운영 ○ (트랙 2 : 중증질환 전문 건강관리소) 라이프로그 주 이용자 연령층(50대 이상)을 고려한 중증질환 전문관리가 가능한 건강관리소 구축, 특정질환 대상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중증질환 모니터링이 가능한 실증장소 구축·운영
지원대상	공통사항	○ (주관기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처리한 실적/경력이 있고 해당 서비스와 관련 데이터 처리를 원활히 수행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 (협력기관) 지역 시민의 계층별(유소년층~고령층)그룹 등을 타깃으로 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실증) 장소 제공이 상시 가능한 광주지역 내 (기초)지자체, 비영리기관, 보건소, 협회, 단체, 사업소 등 ※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할 경우 단독 참여 가능(주관기관이 협력기관 역할을 동시 수행)
	트랙 2 주관기관	○ 위의 공통사항을 충족하고 아래 조건 중 1가지 이상 포함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1) 4대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또는 기업)으로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 운영에 적합한 장비 및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2) 중증질환의 범주에 속하는 질병에 대한 연구를 3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질병의 조기진단 및 진단이후 관리체계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3) 중증질환 조기진단 및 관리체계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전문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사업비		○ 최대 6.5억원 ('24년 당해연도, 과제당 최대 3.25억원) - '24년(3차년도, '24.01.01.~12.31.)~'25년(4차년도)의 경우 과제당 연간 운영비 * 2억원 내외 지원 예정 * 운영비(인건비, 장비유지보수, 장비 추가 도입 등)는 정부 예산심의 결과와 연차평가 결과 등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사업비(6.5억원)이내에서 과제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주요 과업	주관 기관	○ 특정 계층 시민 대상 실증장비 구축 및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관리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보고 ○ 생성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연동 지원(시민의료앱 등) ○ 서비스 인력 교육 및 운영지원(매뉴얼화) ○ 기타 과제 진행 및 현황/결과보고 등 제반사항
	협력 기관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 실증장소 무상 제공을 위해 MOU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 선정 후 MOU 등 행정사항 추진(MOU 주체(안) : 광주광역시↔광주TP↔협력기관(장소제공기관) 등)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실증을 위한 서비스기관(기업) 등 관계기관 협력, 운영 환경 지원 등 ○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문객 모집 등 홍보 지원

□ 사업비 지원항목 및 준수사항

- (지원항목)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금회 최대 3.25억원을 지원되며 인건비, 인테리어 등 서비스 환경 구축비, 실증장비 구축비 등 인정항목만 집행·정산 가능
- 협력기관은 참여기관이 아니므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위 실증장소 제공 및 협력사항 등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 단, 협력기관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에 참여할 경우에만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사업비 지원 可)
- ※ 아래의 "사업비 지원항목"은 기초 가이드라인이며, 사업비 계획 수립 및 집행은 첨부파일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에 따라 추진.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정산(감사)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본 사업의 연차별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며 반드시 첨부파일의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관련 부속지침"(개정된 경우 개정본 기준시점)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 이 규정 및 부속지침에 정의되지 않은 항목에 한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준용

< 사업비 지원항목(예시) >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인테리어, 실증장비) 구축비 ○ 실증서비스 지원 및 현장 서비스 투입인력 인건비 ○ 실증 데이터 수집 및 전문가 자문 ○ 서비스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경비 ○ 본 과제와 관련된 회의비, 출장비 ○ 본 과제와 관련된 성과 홍보비 등	○ 장소 임대료 ○ 과제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서비스/장비 등 도입/개발비 ○ 특근매식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직책수행경비 등 ○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범용성 장비 (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 ○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취득 관련 비용 ○ 엑셀을 포함한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 세금납부 ○ 사업 기간 외 집행금액 등

< 사업비 산정시 필수 기재항목 >

- 수행인력 구성 및 인력운영계획
(건강관리소 관리자 00명, 장비전문인력 00명, 기타 상담/행정인력 00명)
* 건강관리소 관리자의 경우 경력 증빙이 가능한 자료 제출(프로필, 이력서 등)
* 전담인력, 보안시스템 등을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장소 내 상시 비치 및 운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영향평가를 고려한 개인정보보호계획
- 보안/안전관리 시스템(내부 CCTV, 자체보안관리목록 등) 도입 및 운영 방안
-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수도요금), 인터넷(설치포함) 사용료
- 사업비 회계정산비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 (주관기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및 관련 데이터를 처리한 실적/경력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협/단체 등). 또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데이터 처리를 원활히 수행 가능한 중소·중견 기업 또는 비영리기관 ***트랙별 지원조건 확인 必**

- (협력기관*) 지역 시민의 계층별(유소년층~고령층)그룹을 타깃으로 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실증) 장소 제공이 상시 가능한 지역 내 (기초)지자체, 비영리기관, 보건소, 협회, 단체, 사업소 등

* 기타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반 사항(행정 포함) 협조

○ (지원규모)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운영 2개소

① 주관기관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환경 구축

- 선정된 공간 내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환경 구축(인테리어, 공간 및 가구배치 등)
- 지역 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실증장비 선정 및 구매
 - * 실증장비의 구축 목적,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부합도, 데이터 획득 및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 3차년도(당해연도) 실증장비의 종류와 개수는 제한하지 않으나 총 사업비의 최소 50% 이상은 실증장비 구축비용으로 구성하여야 함
 - * 사업 수행기관 선정 후 광주TP와 협의를 통해 제안된 실증장비의 조정 및 최종 확정
- 공간 내 헬스케어&인공지능 등 수요기업 개발제품/서비스의 사용성 평가를 지원하는 소규모 실증리빙랩(실증공간) 구축

○ 실증장비 데이터의 연동 솔루션 구축 지원

- 광주TP에서 별도 추진 예정인 ①클라우드기반 표준저장소, ②시민의료앱, ③대시보드(관제시스템)에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수집 및 생성되는 실증데이터의 연동 지원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운영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운영을 통한 시민 대상 자가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상시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 총 사업기간 중 매년 실시되는 연차평가(중간현장실사 결과 포함)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및 사업 운영기간이 변경(연장, 종료 등) 될 수 있음

② 협력기관(장소제공기관)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실증장소* 제공

- * 사업기간(협약월 ~ '25.12) 내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장소(30평 내외)를 무상으로 제공
- * 실증장소 무상 제공을 위해 MOU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관 선정 후 MOU 등 행정사항 추진(MOU 주체(안) : 광주광역시↔광주TP↔협력기관 등)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및 실증을 위한 서비스기관(기업) 등 관계기관 협력, 운영 환경 지원 등
-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문객 모집 등 홍보 지원
 - * 협력기관은 참여기관이 아니므로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위 실증장소 제공 및 협력사항 등에 대해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 * 단, 협력기관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에 참여할 경우에만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사업비 지원 可)

3 지원조건 등

- ☐ (기술료) 해당 사항 없음
- ☐ (유지기간)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장소는 동 사업기간(협약월~'25.12) 종료일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주관기관(민간위탁사업자)의 경우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자 연장 여부를 검토하며, 사업자 연장시 사업기간 종료일('25.12)까지 운영
 - 연차평가 결과 연장 불가 판단시 차년도부터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관기관이 변경되어 운영 추진
- ☐ (실증 장비 소유권 및 성과물의 귀속)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기관 소유로 함
 - ※ 사업수행은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90호)” 및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192호)에 따름

4 제재 사항

- ☐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대상자(기관/기업,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제재정보 검색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mdgate.ntis.go.kr>)**

※ 사업관리 > R&D정보검색 > 제재정보 에서 기관명이나 이름으로 검색 가능

-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 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2항’에 따라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

- － (재)광주테크노파크 사업운영규정에 의거, 정보통신기금 운용·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신청과제 검토)을 명확화하기 위해 산업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2>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 기준’을 준용하여 사전제외 및 사후관리 대상이 될수 있음

□ 선정·확정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주관 및 협력기관)이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종료 시한 이내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지원사업에 부정확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기타 협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하거나 중단된 경우 등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신청기관이 사업비 확보, 장소 제공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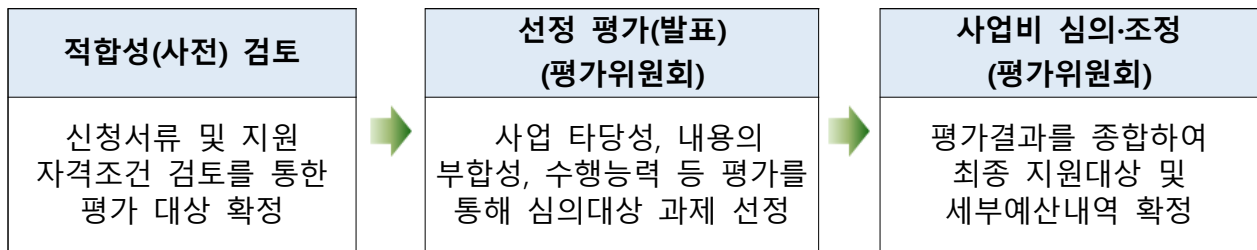
평가 절차

1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적합성(사전) 검토, 선정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후보 선정, 사업비 심의·조정 등을 통해 최종 확정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평가 일정(안)>

절차	일정(안)	주요 업무	추진 주체
공고	'24.02.21.(수)	◦ 공고(광주TP 홈페이지)	광주TP
↓			
접수	'24.03.13.(수)	◦ 서류접수(마감일 오후 15:00 까지)	신청기관
↓			
선정 평가	'24.03.21(목)	◦ 지원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 수행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			
제안내용 협의·조정 (필요시)	'24.03.25(월)	◦ 제안서, 평가 위원 의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검토 후 협의·조정	광주TP, 수행기관 (주관/협력)
↓			
협약체결 및 수행	'24.03.25(월)	◦ 광주TP - 수행기관(주관/협력) 협약	광주TP, 수행기관 (주관/협력)

* 사업 일정 및 주요 사항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적합성 검토

- (개요) 기한 내 접수 완료 신청기업(기관)의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적정성, 참여제한 여부 등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 단독 응모된 경우에도 접수된 신청기업(기관) 또는 컨소시엄만을 대상으로 적정 여부 평가 실시
- (검토기준)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등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광주TP 내부검토
 - ※ 참여제한 여부 등(제출기관 제재 여부, 중복성 검토 등) 을 확인하기 위해 광주 지역사업평가단에 별도 문의 예정
 - ※ 미비 서류 관련 적합성 검토 과정에서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추가 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능
- (검토결과) 부적격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전검토 항목 및 내용(안) >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여부	수행기업/기관, 과제책임자 등의 신청 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여부	수행계획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신청서류 적정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수행기업/기관, 수행기업/기관대표, 총괄책임자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 발표 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기관) 선정
- (대상) 적합성 검토 및 서면 평가 통과 신청기업(기관)
 - * 적정성 검토 통과 기업(또는 기관)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구성
- (평가결과) 평가점수 최소 '보통(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기업(또는 기관)으로 선정. 70점 미만의 경우 탈락
- ※ 발표 평가위원회 결과 선정된 과제가 다수(2개 과제 이상)인 경우 최종 지원대상 과제(사업비 심의조정 대상과제)의 갯수와 지원예산(사업비 심의조정)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이에 과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의 경우라도 최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평가 항목 및 기준(안)>

구 분	세 부 내 용	배 점
운영 적합성 및 타당성	▪ 사업의 목표와의 부합성(10)	20
	▪ 운영계획/사전준비/추진계획 구체성 및 명확성(10)	
수행능력	▪ 실증장비 도입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및 명확성(10)	50
	▪ 성과목표 달성계획의 구체성 및 기대효과(10)	
	▪ 장소의 활용도 및 적정성, 수행기관의 기 관련분야 추진 실적/경험, 제공 수행기관(협력기관 포함)의 과업수행능력 및 의지(30)	
	※ 광산구, 남구, 북구(라이프로그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가산점(최대5점)을 부여 예정	
추진계획 및 데이터 관리 방안	▪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10)	30
	▪ 실증장비의 이해도 및 활용 계획(10)	
	▪ 안전/데이터 보안 관리 구체성 및 명확성(10)	
합 계		100

- (유의사항) 발표평가 시, 총괄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 ※ 단,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담당자에게 발표자 변경 공문(또는 유선연락)등을 사전에 광주TP 담당자에게 제출(통보)해야 하며, 변경되는 발표자는 사업 참여인력만 가능. 이 경우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 인력이 발표
- ※ 사전 통보 없이 총괄책임자 불참 시, 발표 평가 대상 과제에서 제외

□ 사업비 심의·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내역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 후, 최종 지원과제로 확정

□ 협약체결

- 협약서류 검토를 통과한 협약대상 기업(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협약 추진
 - * 협약체결과 관련한 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는 추후 별도로 안내
 -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기타 사항 (해당 시)

□ 사업비 편성시 유의사항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소속 참여 연구원(기존,신규)의 인건비는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산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3-225호, 2023. 1. 19. 제정
 - ** 협력기관은 장소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본 과제에 참여하므로 사업비 편성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단, 협력기관이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수행에 참여할 경우에만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이 경우는 협력기관도 참여기관으로써 사업비 활용 가능)
- 운영비(특근매식비, 유류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직무수행 경비(직책수행경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 단, 평가위원회(심의·조정) 및 광주테크노파크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금액을 수정 요구할 수 있음
- 자산취득비 중 타 라이프로그센터와 동일목적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 별첨의 라이프로그 센터별 장비구축내역을 확인하여 동일목적의 장비는 동일한 제품으로 구축 必
 - * 임의로 타장비를 구축하는 경우 통합플랫폼 연동 시 필요한 별도의 작업 및 절차 일체에 대해 구축기관(기업)이 의무적으로 개별수행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는 구매를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임차료에 편성)
 - * 사업과 직접적 관련 있는 PC/노트북 등도 임차하여 사용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지원금을 받는 수행기관(주관기관)은 사업비(지원금)를 별도의 신규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 집행은 사업비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광주테크노파크는 소요 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이 타 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과제평가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내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해당시)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준수 의무>

- 개인정보를 처리한 수행기관(주관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외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및 법률검토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계획서 내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 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발생대상, 처리현황, 처리계획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 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협약 이전에 데이터 수집, 가공, 공개 및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여부* 등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규정 이행·점검·조치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시행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보위)'을 준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이수 의무>

- 사업수행기관(주관기관)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 전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시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현황점검 및 보완 요구에 대한 협조 의무>

- 광주TP가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시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광주TP에 통보해야 하며 광주TP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점검 및 파기 실시 미 결과 제출>

- 개인정보 활용 종료 후 데이터를 파기하고, 결과물 내 개인정보 포함·개인정보 영향평가·개인정보 공개 등 윤리적 이슈 발생 시 사업결과서 내 데이터 전체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관계법령 위반 시 제재조치>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 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 기타

- 협력기관은 동 사업기간(협약월~'25.12)내 수행을 위한 장소 무상 임대 방안을 제안해야 함
- 주관기관은 관련 분야 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광주광역시) 및 정보통신산업진흥원(광주테크노파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주관기관은 사업 참여 및 결과물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예, 개인정보보호 보험 가입 등)를 취해야 하며 이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의무가 있음

IV

사업신청 및 접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교부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란 에서 다운로드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증빙 등 관련 자료는 첨부 자료로 제출
- 제공된 서식 내 목차(안)은 필수 작성 내용이나, 필요시 본 목차의 구성 주요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추가할 수 있음
- 제공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1. 운영 및 관리 계획

- 가.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계획
- 나.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공간 계획
- 다. 라이프로그 건강관리서비스 안전조치 이행계획
- 라. 생성데이터 보안관리 대책

2. 실증지원장비 세부추진 계획

- 가. 실증지원 장비 구축 방향 및 계획
- 나. 실증지원 장비별 운영 방법
- 다. 실증지원 장비 측정항목에 따른 데이터 수집/관리 계획
- 라. 자가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운영 계획
- 마. 추진 일정

3. 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

4. 사업비 소요명세

5. 결과물

6. 일자리 창출 계획

7. 사업 확산 및 지속 운영 방안

2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양식확인)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jtp.or.kr) 지원사업공고
→ ‘라이프로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란
→ 다운로드 후 작성
- (제출기한) 2024년 03월 13일(수), 15:00까지
 - * 신청기업이 당일 15시 이전에 메일을 발송했다라도 당일 15시까지 광주테크노파크 담당자의 이메일에 도달된 시간을 기준으로 접수됨. 15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므로(미제출로 간주)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여유있게 제출 요망
 - * 발표평가위원회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문의처

구분	이름(직책)	연락처	이메일주소(제출처)
사업내용	이은영(전임)	062-602-7276	ley@gjtp.or.kr
행정사항	황인영(전임)	062-602-7281	hiy9529@gjtp.or.kr

□ 제출 서류

제출서류 목록					
구분		양식제공 여부	제출필수 여부	제출 해당기관	
				주관기관(업 또는 컨조사업	협력기관
1. 사업계획서 * 표지서명 및 날인 후 표지페이지의 이미지를 삽입하여 HWP파일로 별도 제출		○	필수제출	○(주관기관이 제출, 1식)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붙임1	X	필수제출	○	○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붙임2	X	필수제출	○	-
4.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붙임3	X	필수제출	○	-
5. 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붙임4	○	필수제출	○	-
6. 과제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붙임5	○	필수제출	○	-
7.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붙임6	○	필수제출	○	-
8. 현금부담·현물출자 협약서(해당시)	붙임7	○	선택사항	해당시	-
9.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붙임8	○	필수제출	○	-
10.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붙임9	○	필수제출	○	-
11. 발표자료(자유양식)	붙임10	X	필수제출	○(주관기관이 제출, 1식)	
12. 협력기관의 장소제공 및 협력 확인서(협력기관 직인 必)	붙임11	○	필수제출	-	○
13. 기타 증빙서류(사업비 산출내역 관련 견적 등)	붙임12	X	선택사항	필요시	필요시
14.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붙임13	X	해당시	해당시	-

- * 사업계획서 외 각 제출서류는 각 참여기관별로 첨부파일을 ZIP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번 더 ZIP 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 * 모든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제출(사업계획서는 HWP 파일 별도 제출)
-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될 수 있음.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추가 확인 및 보완을 위해 평가위원회 전까지 광주TP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발표자료는 제출시 필수 제출하되, 발표평가위원회 전 까지 수정보완하여 제출가능함
-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써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 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렴이행각서, 보안서약서 등 제출)